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도 및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상품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법률 제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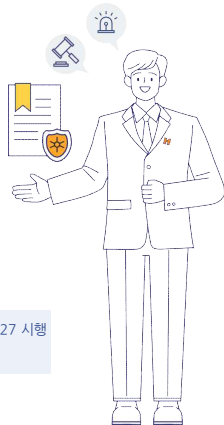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12.10)를 계기로 제정

- 2021.1.26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 공포 1년 후 2022.1.27 시행

법률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 상시 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개인사업자,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 : 2024.1.27 시행
- 상시 근로자 50인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 적용 제외



*본 자료는 법률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은 최종약관 확정에 따라 약관의 문구, 담보명,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근로자 피해)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상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시설에 의한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중

- ①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질환자 1년내 3명 이상 발생

태안화력발전소 사고(18년)
이천물류센터 화재(20년)

중대시민재해(제3자 피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 ① 사망자 1인이상 또는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가습기 살균제 사건(11년)
세월호 참사(14년)

*본 자료는 법률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은 최종약관 확정에 따라 약관의 문구, 담보명,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내용

법률상형사처벌및손해배상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사망) 징역1년이상과벌금10억 원이하병 행부과 (부상, 질병)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5년 이내 재 발생 시 50% 가중처벌	가중처벌 없음
	안전보건교육 미 이수 : 과태료 5천만 원	교육 및 과태료 없음
법인 또는 기관	벌금	(사망)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 10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5배 배상책임

*본 자료는 법률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은 최종약관 확정에 따라 약관의 문구, 담보명,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기존) VS 중대재해처벌법(신설)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보호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종사자 (근로자+도급·용역·위탁노무제공자) 이용자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이용자)
형사처벌 대상	위반 행위자 (공장장, 안전담당 임원 등) → 대표이사는 위반 행위자 아님 (처벌 가능성 낮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임원) 등 → 대표이사 처벌 가능성 높아짐
중대재해 의미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 /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 부상(6개월 이상 중상 2명, 질병 3명)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 부상(2개월 이상 중상 10명, 질병 10명)
중대재해 조치	작업중지 등 안전보건조치, 노동청 신고 의무	사고발생 공표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중대재해 처벌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or 1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미준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or 1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중대재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 원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없음	경영책임자 등 고의 또는 중과실 시 손해액의 5배 이하 배상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중대재해처벌법
변경 사항

- 제3자까지 보호 대상 확대
- 대표이사 처벌 가능성 높아짐
-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벌금, 징역형 동시 부과 가능

- 기업에 징벌적배상책임 부과
- 5년 이내 재 발생 시 가중처벌





상품 안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가입대상

중대재해처벌법규율 대상법인 또는 기관

피보험자 정의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주요보장내용

① 법률상 배상책임 (보통약관)

보험기간 중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포함, 단, 형사사건 방어비용은 면책) 단,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는 면책

②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약 (필수선택)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③ 업무상 형사사건 방어비용 특약 (임의선택)

- 피의자로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여, 본 사건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의자가 됨으로써 실제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 단,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고, 불기소결정의 주문이 “혐의 없음” 또는 “최가 안됨” 인 경우에 한정
- 심급 구분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사건이 보험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 (무죄 판결 시)

*본 자료는 법률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은 최종약관 확정에 따라 약관의 문구, 담보명,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주요보장내용

- ④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특약)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⑤ 위기관리 실행비용(I) (특약)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이 공표되고, 해당위기에 대해관리 및 손해를최소화하는목적으로 부담한 비용
 2. 대상 비용 : 위기관리컨설팅, 사과문의작성, 위로금, 위문품 등 ※ 상세한보상조건은 약관 참조
- ⑥ 위기관리 실행비용(II) (특약)
 1.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 부터 수사를 받게되는 사건에 대해, 해당 위기에대한 약관상 보상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
 2. 대상 비용 : 위기관리컨설팅 비용, 안전진단의뢰 비용 ※ 상세한 보상조건은 약관 참조
- ⑦ 오염손해 보장확대 (특약)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7호에도 불구하고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⑧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약)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근재, 일반배상 등과의 중복보험 발생 관련 이슈 해소 가능
- ⑨ 담보범위 설정가능
"중대산업 재해"만을 또는 "중대시민 재해"만을 담보 가능

*본 자료는 법률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은 최종약관 확정에 따라 약관의 문구, 담보명,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중대재해배상책임 보장범위 비교

구분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		국내근재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임원배상
관련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가입 전제	시설 소유, 관리상 책임	제조물책임법 제조, 설계, 관리상 책임	업무상 과실 경영배상책임
피보험자	법인, 기관,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기관 또는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사업주	법인, 임원
피보험이익	법률상 배상책임+징벌적배상		법률상 배상책임	법률상 배상책임	법률상 배상책임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N		N	N	N	N
사용자배상 (중대산업재해)	O	보통약관에서 담보	O	보통약관	X	X
제3자손해배상 (중대시민재해)	O	보통약관에서 담보	X	O	보통약관	O
징벌적 배상	O	특약으로 담보	X	X	X	X
형사 방어비용	O	특약으로 담보	X	X	X	O
		무죄 한정				
민사 방어비용	O	보통약관	O	보통약관	O	보통약관
비고						



FAQ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도 및 상품안내

1.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인가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 등에 정의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됩니다.

[기업의 주요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 등

- 재해예방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정부·지자체의 개선, 시정사항 이행

2.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등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의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고 제3자의 종사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주요 보장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및 과태료를 제외한 배상책임 및 방어비용 범주에서 보장됩니다. 단, 징벌적 배상 및 형사 방어비용은 반드시 특약으로 추가 가입하셔야 합니다.

	인사 배상 및 방어비용(기본계약)	징벌적 배상(특약)	형사 방어비용(특약)	벌금 등
보장여부	○	○	○	×

* 중복보험이 있는 경우 비례보상되며, 자세한 보장내용 및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형사 방어비용(특약)의
상세 보장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로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 부터 수사를 받게되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과 같이 기소가 되지 않거나 형사소송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전제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의 형사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한함)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단, 상급심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최종 판결이 무죄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심급별 형사방어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심급 중 무죄판결 선고가 아니어서 보상받지 못하였던 형사방어비용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위기관리실행비용(특약)
(I), (II)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해당 특약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위반 법률, 시점 및 보상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보상하는 비용 약관 참조)

- ☞ 위기관리 실행비용(I)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형 확정시) 시
- ☞ 위기관리 실행비용(II)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수사개시** 시

* 본 자료는 법률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은 최종약관 확정에 따라 약관의 문구, 담보명,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